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(이촌1동 302-75) [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4996호

시행일자 2017. 8. 24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8호(2017. 8. 24.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4호, 2017. 8. 18.)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 개정 내용]
-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신설,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정
- 시행일 : 2017.10.1. 부터(단,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7.9.1. 부터)

붙임: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